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2014년 2월 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: 산업기술기반팀 이재식 팀장(044-203-4502), 전성규 사무관(044-203-4503)

산업부, 유휴·불용 산업기술개발장비 일괄 이전·재배치 실시

- '13년 실태조사 결과, 유휴·불용상태인 장비 1,800여대 대상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윤상직)는 그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 중 보유기관에서 잘 쓰지 않는 유휴·불용장비를 쓸 수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는 '유휴·불용장비 일제정비사업'을 '14년 2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음.

* 산업기술개발장비 : 산업기술 개발기획, 연구개발, 시험·평가, 시생산·인증, 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를 통칭

○ 이에 따르면, 유휴·불용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하길 원하는 기관 (연구소, 테크노파크, 대학 등)은 '14년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산업기술평가관리원(KEIT) 연구장비관리단 (www.etube.re.kr)에 장비 이전을 신청하면 됨.

- 신청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로, '13년 12월말 현재 해당 장비구축사업 (기반구축, 기술개발, 지역사업 등)이 종료된 장비임.

○ 이전신청된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 (중장위)가 유휴·불용의 원인, 수요기관의 활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전 승인여부를 심의할 계획임.

< 유휴·불용장비 이전 절차 >

2.7.~3.8.	3월~4월중	4월중~5월	6월	6월~8월말	9월~
장비 이전신청 (장비 보유기관)	⇨ 장비 이전여부 심의 (중장위)	⇨ 이전대상장비 공고 및 장비 양수신청 (장비단/수요기관)	⇨ 장비 양수기관 선정 (중장위)	⇨ 장비 이전·폐기 (장비 양수 기관/보유기관)	⇨ 활용실적 관리 (장비단)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'95년부터 산업기술개발용 장비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, '00년부터 '12년까지 21,632대 (3조 483억원)의 장비를 구축하였음.

○ 이들 장비 중에 '13년말 현재,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(최장 5년) 종료 장비는 1만여대, '13년 실태조사 결과 유휴·불용상태인 장비는 1천8백여대로 파악되었음.

* 내용연수 : 장비를 계속하여 쓸 수 있는 기간(내구연수, 감가상각의 기준)

○ 그럼에도 유휴·불용장비 보유기관들이 타기관으로의 이전을 꺼리고 기관 내에 방치해왔던 이유는 장비관리 책임에 따른 부담과 정부 승인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.*

* '11년,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문조사 결과

□ 금번 일제정비사업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, 유휴장비 등을 쓸 수 있는 기관에 이전하여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자 계획되었음.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전 대상 장비 보유기관과 수요기관을 연결하는 장비 매치메이킹을 추진하고, 장비 이전 및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장비 인수기관에 지원할 계획임.

○ 금번 유휴·불용장비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e-Tube (장비 공동이용플랫폼, www.etube.re.kr, '13.11.21. 개설)를 통해서 진행됨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일제정비사업을 통해, 기업 등 장비이용자가 원하는 장비를 손쉽게 활용하고, 신규·중복 구매 억제를 통해 장비구축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전성규 사무관(☎ 044-203-450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 유휴·불용 산업기술개발장비 일제 정비사업 추진절차

< 유휴·불용장비 일제정비 절차 >



* 이전대상 장비 중 수요기관 없이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는 보유기관이 자체 처분 (유상임대, 매각 등)

1 유휴·불용장비 이전신청 (장비 보유기관)

○ 특별기간 내에 e-Tube '사고팔고' 섹션에 장비 이전신청을 등록*

* 첨부 2 공고문의 '장비 이전(양도) 요청서'를 작성하여 첨부

2 이전대상 장비 선정 (KEIT 중장위)

○ 이전신청 장비 및 해당 보유기관 현장조사 실시

- 장비의 상태, 활용 가능성, 보유기관의 귀책 여부 등을 조사

○ 세부 심의기준을 정하여 이전여부를 심사하고, 장비이전을 승인

- 이전대상 장비는 e-Tube '사고팔고' 섹션에 등록하여 상시 관리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3 이전대상장비 및 수요기관 모집 공고 (KEIT 장비단)

○ (공고 시기) '14. 4월중 (공고기간: '14.4월중~5월)

- 이전대상 장비 정보 (현재 상태 사진, 장비담당자 등)를 e-Tube 상에 제공

4 장비 이전수요 신청 (수요기관)

○ 공고기간 내에 e-Tube '사고팔고' 섹션에 장비 활용계획을 등록

5 양수기관 선정 및 이전 (KEIT 중장위/장비단, 보유기관, 양수기관)

○ (양수기관 선정) 중장위는 세부 심의기준을 정하여 장비 활용계획 등을 심사하고, 양수기관을 선정

- 장비 공동활용을 고려한 양수기관의 입지, 기능, 활용계획 등을 검토

○ (이전 설치) 장비 양수기관은 보유기관과 협의하여 장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장비단에 제출

- 장비 이전설치 및 시험가동 완료 후, 이전완료보고서를 장비단에 제출

○ (자체 처분) 장비보유기관은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에 대하여 자체 처분 (유상임대, 매각 등)을 실시한 경우, 그 결과를 장비단에 보고

- 수입은 보유 장비의 교체, 성능향상, 유지보수 등에 재투자

6 폐기대상 장비 선정 및 폐기 (KEIT 중장위, 장비 보유기관)

○ 중장위는 불용장비의 폐기 여부를 심사하고, 폐기대상 장비를 선정

- 장비의 내구성, 상태, 활용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

○ 장비 보유기관은 해당 장비를 폐기하고, 관리대상에서 삭제

- 장비 폐기처분에 따른 수입은 해당사업에 재투자

7 이전장비 활용실적 보고 및 관리 (수요기관, KEIT 장비단)

○ 장비 양수기관, 임차기관, 매수기관은 이전 후 3년간 e-Tube를 통해 장비활용실적을 등록하고 보고서를 제출

첨부 2 **유휴·불용 산업기술개발장비 일제 정비사업 계획 공고(안)**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 - 44호

『유휴·불용 산업기술개발장비 일제 정비사업 계획 공고』

유휴·불용 상태의 산업기술개발장비를 장비활용 희망기관에 이전하는 일제 정비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4년 2월 7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산업기술개발장비 (연구장비) 중 활용률이 매우 낮거나, 방치중인 유휴 불용 장비를 발굴하여 활용희망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제 정비사업

○ 그간 장비 보유기관이 활용하지 않으면서 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방치한 장비의 이전 및 재활용을 활성화

□ 대상 장비

○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장비 중, '13.12월말 현재 해당 사업기간이 종료된 장비
- 다만,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등과 같이 사업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, 장비 설치 후 3년 이상 경과된 장비

※ 우선 이전대상 : '12년 감사원 감사결과, 신뢰성시험평가기반구축사업으로 도입된 장비 중 유휴·불용장비, '13년 정부종합 실태조사결과,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휴·불용장비 ('13년 국가연구시설·장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)

□ 지원내용

○ 지원규모 : 장비 양수기관의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, 장비 당 취득가의 10% 이내에서 2천만원 내외 (예산범위 내 지원)

○ 지원항목
- (장비이전비) 유휴·불용장비의 이전·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
- (장비수리비) 유휴·불용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
- (부 품 비) 유휴·불용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부품비 (소모품비 제외)
- (장비교육비) 양수기관의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·훈련비

※ 필요 수요 및 내용에 따라 장비수리비, 부품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□ 추진절차

○ 일제정비사업계획 공고('14.2.7.)→ 이전신청 접수(2.7~3.8)→ 중장위 심의(3월)→ 양도대상 장비 공고(4월중)→ 양수신청 접수(4~5월)→ 중장위 심의(6월)→ 이전·활용(중장위 심의후~)

※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추진



※ 유휴·불용 장비의 정의

구 분	설 명
유휴장비	-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,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
불용장비	- 내구연한 완료, 화재·침수 등으로 인한 실효성이 상실된 장비, 파손, A/S 불가 등의 사유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장비, 보수를 하더라도 향후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장비

2.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

○ 장비 양도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(연구장비)를 도입한 기관으로 해당 장비 중 유휴·불용장비를 보유한 기관

○ 장비 양수기관 : 교육기관, 연구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

□ 신청제한

○ 접수마감 전일까지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

□ 참고사항

○ 양도 대상 장비 및 양수기관 선정은 KEIT(중앙장비심의위원회)에 위임하여 시행

○ 해당 보유기관 및 과제책임자에게 장비 유휴 또는 불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,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 없음. (다만, 당초 공동활용 목적으로 도입된 장비로,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유기관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)

○ 장비 양도기관은 국유재산법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정하는 기준에서 상호 관리전환, 무상양여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필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.

○ 장비 보유기관은 장비의 소유권이 귀속된 기관을 말함.

○ 장비 양수기관은 이전 후 3년간 KEIT(연구장비관리단)에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

3. 신청방법

□ 신청요령

○ 장비 양도기관 : 제출서류 작성 후 '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플랫폼(e-Tube)' 홈페이지(www.etube.re.kr)에 장비양도 신청

○ 장비 양수기관 : 제출서류 작성 후 '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플랫폼(e-Tube)' 홈페이지(www.etube.re.kr)에 장비양수 신청

※ 신청양식 다운방법 : '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플랫폼' 홈페이지(http://www.etube.re.kr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)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(http://www.keit.re.kr > 주요사업 > 사업공고)에서 양식 다운

※ 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장비가 확정되는 4월중 추후 공고에 따라 신청

□ 신청서 제출

○ 제출서류
- 장비 양도기관 : 장비 이전(양도) 요청서 1부
- 장비 양수기관 : 장비 이전(양수) 요청서, 장비활용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(4월중 공고 후 제출)

○ 문의처
-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(044-203-4503, skjun@korea.kr)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 (02-6009-8441, etube@keit.re.kr)

□ 신청기간

○ 장비 양도기관 : 2014. 2월 7일 ~ 2014. 3월 8일 (30일간)
○ 장비 양수기관 : 2014. 4월중 공고 예정

□ 신청 시 참고사항

○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을 우선 적용

○ 이전받는 기관이 이전비용 일부를 부담할 경우, 이전장비 선정 시 가산점 부여

4. 관련법령 및 규정

○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(연구장비·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)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(연구장비 활용 촉진 등)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(사. 유휴·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)
○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(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고도화)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(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고도화 추진)
○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(7. 연구시설·장비의 처분)
○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제출서류 양식(장비 양도 기관)

장비이전(양도) 요청서

장비명(국문)			
장비명(영문)			
모델명		설치 년도	'00.00.00
e-Tube 자산관리번호*	0000-0-0000	NTIS 자산관리번호*	
장비관리부서		현재 설치장소	
장비담당자** 직책/성명	/	연락처 전화/메일	/
장비 상태 ☑	□ 사용가 □ 수리필요	현재 장비사진	별첨
사업과제명			
사업관리기관		사업기간	'00.00.00 ~ '00.00.00

당 기관에서는 상기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양도(관리이전)를 요청합니다.

2014년 월 일

장비보유기관명 :

장비관리부서장 : (인)

장비보유기관장 : (직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* 미등록 자산의 경우 미기재 ** 장비담당자는 장비관리부서와 다를 수 있음.